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5604 |
|----------|-------|

발의연월일 : 2025. 12. 24.

발 의 자 : 최민희 · 이주희 · 노종면  
김 현 · 이재관 · 김승원  
조인철 · 황정아 · 이재강  
이병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제공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나,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규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특히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콘텐츠와 상품을 추천하고 있으나, 이용자는 자신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선별 기준을 알 수 없으며, 편향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확증편향 심화, 사회적 차별의 재생산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알고리즘 기반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 공개, 알고리즘의 영향 평가, 보고서의 제출의무 등을 규정하여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 · 제15호, 제32

조의5제1항제1호·제2호, 제44조의11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3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알고리즘”이란 어떠한 문제의 해결 또는 의사결정을 위하여 입력된 정보를 기초로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연산·논리·규칙 또는 과정을 말한다.

15.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란 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정보 등을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정보, 재화, 서비스 등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추천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제32조의5제1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업무

2. 제44조의11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제5장에 제4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11(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에 사용되는 주요 기준의 종류 및 적용 방식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의 공개
2. 이용자가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의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의 제공
3. 자신의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가 사람의 기본권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 이 경우 영향평가에는 인종, 연령, 성별, 정치적 성향 등에 대한 차별성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 및 영향평가의 내용·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제3항제4호의3 및 제4호의4를 각각 제4호의4 및 제4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제44조의11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 ~ 13. (생    략)<br><u>&lt;신    설&gt;</u>                                     | 제2조(정의) ① -----<br>-----.<br>1. ~ 13. (현행과 같음)<br>14. <u>“알고리즘”이란 어떠한 문제의 해결 또는 의사결정을 위하여 입력된 정보를 기초로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연산·논리·규칙 또는 과정을 말한다.</u><br>15. <u>“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란 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이용 정보 등을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정보, 재화, 서비스 등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추천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u> |
| ② (생    략)<br>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br>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 ② (현행과 같음)<br>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br>-----<br>-----<br>-----<br>-----<br>-----                                                                                                                                                                                |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3.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설>

-----  
-----  
-----.

1.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업무

2. 제44조의11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의11(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에 사용되는 주요 기준의 종류 및 적용 방식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의 공개

2. 이용자가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의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의 제공

제76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의2. (생략)

<신설>

3. 자신의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가 사람의 기본권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 이 경우 영향평가에는 인종, 연령, 성별, 정치적 성향 등에 대한 차별성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 및 영향평가의 내용·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4의2. (현행과 같음)

4의3. 제44조의11제2항에 따른

|                         |                                   |
|-------------------------|-----------------------------------|
| <u>4의3. · 4의4.</u> (생략) | <u>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u> |
| 5. ~ 25. (생략)           | <u>4의4. · 4의5.</u> (현행 제4호의3      |
| ④ (생략)                  | 및 제4호의4와 같음)                      |
|                         | 5. ~ 25. (현행과 같음)                 |
|                         | ④ (현행과 같음)                        |